

- 통계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2018)
- 작성기관 및 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650
- 조사 목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활용 분야·실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반영
- 작성유형: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를 통해 결과 배포
- 조사대상 범위: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조사대상 지역: 전국
-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204,628개소
- 조사대상 적용분류: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주체별 설치현황
- 조사항목: 6개의 대분류, 19개의 중분류, 357개의 세부항목, 해당여부(35개 항목), 설치항목(219개 항목), 세부질문(103개 항목)
- 조사표: 별도 첨부
- 공표주기: 5년
- 공표시기: 조사기준년도 익년 2월
- 공표방법 및 URL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 장애인정책 - 자료실
- 조사기준시점: 2018. 8. 31.
- 조사기간: 2018. 5. 1. ~ 2018. 8. 31.
- 조사주기: 5년
- 조사계속여부: 5년마다 1회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설치율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의한 대상시설별로 적용되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항목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비율임. 본 조사를 위해 작성된 조사표의 질문의 답변이 1(적정), 2(미흡)로 나온 항목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며,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나누어 1(적정), 2(미흡), 3(미설치)로 구분하며 1(적정)로 평가된 설치현황은 적정설치율로 산출됨. 2(미흡)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접근·이동·이용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정도임을 감안하여, 1(적정)과 2(미흡)로 평가된 현황을 합하여 설치율로 산출함.
 - 설치율의 증가와 함께 적정설치율의 증가는 장애인등의 접근성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율보다 적정설치율이 더욱 중요한 지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용어해설
 -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 자료수집방법: 현장관찰조사
-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조사연혁
 - 제1회: 1998년 → 제2회: 2003년 → 제3회: 2008년 → 제4회: 2013년 → 제5회: 2018년

○ 조사체계



그림.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방법

- 승인번호: 제117035호
- 승인일자: 1995. 6. 9.
- 통계종류: 일반통계(작성방법: 조사)